

의안번호	2204896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8.
추 계 번호	24F4446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포함할 경우, 농어촌특별세는 2026년 34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농어촌특별세, 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6
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포함(안 제4조제2호의2 신설)	-34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(비과세)	○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포함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(비과세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6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 -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
 - 다만,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바탕으로 농어촌특별세율(20%)을 적용하여 산출하며, 해당 법인세 감면액은 2023년의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가장 최근 법인세 신고자료인 2023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농어촌특별세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세 감면세액 등에 부가세(surtax) 형태로 부과되고 있으며, 농업협동조합 등 일부 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
 - 현행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제1항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의 20%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
 - 동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이러한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포함하려는 것임

- (감면실적)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조합법인 과세특례로 인한 법인세 감면실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, 2024년 감면실적(잠정치)은 3,289억원
- 동 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는 일정하지 않으며 최근 5년(2020~2024년) 평균 감면액은 3,850억원 수준

[표 3] 조합법인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감면실적	3,271	3,347	4,230	5,113	3,289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추계방법)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추정한 후, 농어촌특별세율(20%)을 적용하여 추계
-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세특례로 인한 법인세 감면액을 추정하면, 총부담세액 기준 1,745억원으로 추정
 - 세수효과는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현행 및 개정안의 1법인당 총부담세액의 차이와 법인 수를 반영하여 계산

[표 5] 과세표준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세수효과: 2023년 신고기준

		법인수 (A,개)	1법인당						전체 세수효과 (A×D, 억원)	
			과세특례 미적용			과세특례 적용				세수효과 (D=C-B, 억원)
			과세표준 (억원)	세율 (%)	총부담 세액 (B,억원)	과세표준 (억원)	세율 (%)	총부담 세액 (C,억원)		
신용협동조합		863	—	—	—	—	—	—	-3.23	-566.58
	2억 이하	263	0.8	9	0.06	0.8	9	0.06	0	0
	20억 이하	525	7.2	20	1.31	7.2		0.59	-0.72	-378.58
	20억 초과	75	37.3		6.27	37.3		12	3.76	-2.51
새마을금고		1,061	—	—	—	—	—	—	-4.19	-1,178.76
	2억 이하	190	0.9	9	0.06	0.9	9	0.06	0	0
	20억 이하	699	8.2	20	1.58	8.2		0.71	-0.87	-606.58
	20억 초과	172	47.5		8.32	47.5		12	4.99	-3.3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과세특례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하므로 2023년의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국세청 제출자료를 통해 추정한 2023년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세특례로 인한 법인세 감면액: 1,745억원
- 개정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감면액은 추정한 법인세 감면액을 바탕으로 농어촌특별세율(20%)을 적용하여 추계
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율은 20%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효과 추정

(단위: 억원)

	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(A)	농어촌특별세율 (B)	농어촌특별세 감면액(C=A×B)
2025년	1,745	20%	349

- (추계결과)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포함할 경우, 농어촌특별세는 2026년 3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농어촌특별세, 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6
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포함(안 제4조제2호의2 신설)	-34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